

#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(일본 도쿄지사)

## 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(2020.2월)

### 1. 일본 개정된 식품표시법 본격 적용 개시('20.4.1~)

- 일본 소비자청은 그동안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에서 각기 운용해 왔던 식품표시법을 2015.4.1.로 일원화된 식품표시법으로 통합 운영하는 개정을 하였으며, 시행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, 2020.4.1.일자로 모든 식품에 대해 적용이 시작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

### 2. 주요 시행 내용

#### ○ 원재료명의 표시방법 변경

- 첨가물과 첨가물 이외의 원재료가 어느쪽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「첨가물」 항목명을 마련하여 표시해야 함

| 구분   | 구기준                  | 구분   | 신기준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
| 원재료명 | 밀가루, 설탕, 식염, 팽창제, 향료 | 원재료명 | 밀가루, 설탕, 식염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첨가물  | 팽창제, 향료     |

\* 신기준에서는 상기표시방법 이외에도 원재료명란에 별도 「/」 표시를 하여 첨가물임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함

#### ○ 알레르기 물질 표시방법 변경

- 해당 식품에 포함되는 알레르겐 특정원재료를 모두 표시해야 함
- 특정원재료(7성분) : 계란, 우유, 밀가루, 땅콩, 메밀, 새우, 게
- 개별 원재료의 바로 뒷부분에 괄호표시로 하여 특정 알레르기 원재료 물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함
- 표시면적 문제 등으로 인해 괄호표시가 어려워 별도 일괄표시를 할 경우에는 사용된 특정원재료 모두를 일괄 표시란에 기재하여야함

#### ○ 영양성분표시 의무화

-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
- 의무표기 : 에너지, 단백질, 지질, 탄수화물, 나트륨(식염상당량)
- 임의(권장) : 포화지방산, 식물섬이
- 임의(기타) : 당류, 당질, 콜레스테롤, 비타민 · 미네랄류
- 영양 강조표시 방법
  - 기존제품보다 열량, 지질등이 저감되었다는 표시 또는 성분이 강화되었다는 표시를 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절대치와 함께 25% 이상의 상대차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됨
- 영양기능식품의 규정 변경
  - 비타민 C가 일정량 이상 포함된 제품등에 표시가능한 영양기능식품의 경우 새로운 성분으로 n-3계 지방산, 비타민 K 및 칼륨이 추가됨
  - 영양요소 표시기준치에 대한 대상연령, 기준열량에 관한 문구 기재
  - 특정대상자(환자, 임산부 등)에 대해 주의 필요시 해당 주의 표시필요
  - 영양성분의 양 및 열량 표시시 식품단위는 1일당 섭취 분량당의 성분치를 기재 필요
  - 신선농산물 등의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 보존방법을 표시
-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분의 통일
  - 그동안 JAS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왔던 식품구분에 대해 JAS법에 근거하여 구분이 정리됨
  - 건조과실처럼 간단한 가공식품일 경우 구 기준에서는 알레르기 및 제조업체 소재지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었으나, 신기준에서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표시가 필요함
- 식품 표시 가능면적이 작은 경우의 표시방법
  - 지금까지 표시가능면적이 30cm<sup>2</sup>이하일 경우에는 과거 생략이 가능했던, 보존방법,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, 알레르기물질, L- 페닐알라닌화합물에 대해서는 생략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
  - 표시가능면적 30cm<sup>2</sup>이하일 경우 표기해야할 사항

보존방법,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, 알레르기물질, L- 페닐알라닌화합물, 업체명(명칭), 주소

<년도별 주요 경과 내용>

| 2018  | 2019 | 2020 |
|---|------|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품표시 기준 통합운영('15.4.1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58개 기준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 표시기준에 소비자청에서 1개 일괄 기준으로 통합 운영</li> <li>- 단 예외사항으로 식품 위생법과 JAS법 기준 통합에 있어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분 등을 변경</li> <li>- 식품위생법, 건강증진법(후생노동성 소관), JAS법(농림수산성 소관)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적용('20.4.1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15.4.1일부터 모든 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시행되었으나, '20.4.1일부터 의무화 적용</li> </ul> </li> </ul>   |      |   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알레르기 식품표시대상 물질에 아몬드 추가('19.9.19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아몬드」를 특정 알레르기 물질에 포함시켜 제품 패키지에 표기</li> </ul> </li> </ul>   |      |      |

II **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**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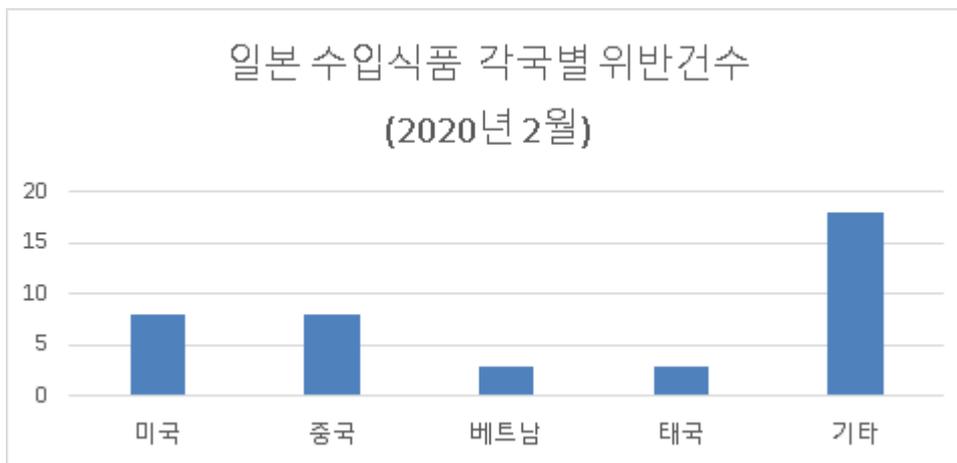
○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. 2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40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-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특별히 없음
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대장균 검출 등 위생위반이 13건(32.5%),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0건(25.0),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 8건(20.0)으로 나타났으며, 첨가물 위반이 9건(22.5)으로 나타남
-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바이러스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중국산 식품류의 대일 수출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위반건수도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4.5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## 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- 미국 및 중국 모두 각8건의 식품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전체 수입국중에서 위반건수가 제일 높은 국가들로 나타남.
- 미국의 경우 8건의 위반건수 중 소맥 등에서 부패, 이취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4건, 곰팡이균 아플라톡신 위반이 3건이며, 옥수수에서 잔류농약 위반이 1건으로 발생함
- 중국의 경우 총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는데, 대추차등에서 솔빈산류 대상의 사용으로 인한 위반이 4건, 냉동블록콜리에서 프로시미돈 잔류농약 위반 1건 등의 위반이 발생함
- 베트남의 경우 냉동연어에서 대장균균 발생 1건, 냉동새우에서 항생제 위반 2건의 사례가 발생하여 모두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음
- 태국의 경우 신선듀리언(과실)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, 냉동과실조정품 및 쌀에서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2건이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